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49 발의연월일: 2020. 11. 10.

발 의 자:이용우·고영인·강준현

홍정민 · 이용빈 · 민병덕

진성준 • 서영석 • 김주영

송영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으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2조제1항제8호가목, 제35조, 제55조, 제64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항제8호가목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35조 본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55조 본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제64조제1호 중 "대차대조표"를 "재무상태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 ①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"비금융주력자"라 함은 다음	8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자를 말한다.	
가. 동일인중 비금융회사(대	7 }
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	
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	
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	
인 자의 자본총액(<u>대차대</u>	
<u>조표</u> 상 자산총액에서 부채	<u> </u>
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	
한다. 이하 같다)의 합계	
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	
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	
액의 100분의 25 이상인	
경우의 당해 동일인	
나. ~ 마. (생 략)	나. ~ 마. (현행과 같음)
9. • 10. (생 략)	9. • 10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5조(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	제35조(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
율) 비은행지주회사는 자본총	율)

액(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 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없다. 다만,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비은행지주회사로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총액을 보유할 수 있다.

제55조(재무제표의 공고 등) 금융 지주회사는 그 결산일부터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대차대조표,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「주식회사 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공고하여야한다.다만,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수 없는서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의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수있다.

<u>재무상태표</u>
<u>.</u>
 제55조(재무제표의 공고 등)
세00소(새무세표의 중끄 중/

제64조(과징금) 금융위원회는 금 저용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, 제6조의4, 제34조, 제36조, 제44조, 제45조, 제45조의2, 제45조의3,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: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1의2. ~ 14. (생략)

세64조(과징금)
1
<u>재무상태</u>
<u> </u>
1의2. ~ 14. (현행과 같음)